

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6. . .
발 의 자	양진오 의원 외 7인

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양진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6.
발 의 자: 양진오·김낙관·김원섭·김춘남
소진혁·신용하·장세구·정지원
의원(8인)
찬 성 자: 강승수·김근한·김민성·김영길
김영태·박세채·이지연·장미경
추은희 의원(9인)

1. 제안이유

필수적인 소형 농업기계 구입 지원을 위해 보조금 300만 원 이하의 기
종에 한해서 지원 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신청 제한 기간 조건부 변경(안 제3조제1항제1호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」 제8조제2항제8호

나. 부서검토: 농업정책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
라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“5년”을 “300만 원 이하는 3년, 그 외에 5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」

제8조(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) ① (생 략)

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할 수 있다.

1. ~ 7. (생 략)

8. 농어업 기계화 촉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

9. ~14. (생 략)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 : 농업정책과

조 례 명	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근거 법령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「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」 제8조제2항제8호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신청 제한 기한 조건부 변경(안 제3조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(당초) 5년 → (변경) 보조금 300만원 이하 3년, 그 외 5년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농업정책과에서는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업기계 구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○ 소규모 농가의 농업기계 교체 부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기대효과 : 기 지원받은 보조금에 따라 제한 기한을 차등 적용하여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비 부담 완화 및 보급 확대○ 소요예산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○ 문 제 점 : 해당사항 없음	

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안 제3조(지원 대상 및 범위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농업기계 구입 소요 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-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김혜은(☎480-5772)